#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05, 2017. 9. 8.]

## 【전문】

## 【피 고 인】

피고인 1. A 2. B

### 【항 고 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 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아파트 1, 2단지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A는 D아파트 1, 2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 내에서 피해자가 대자보를 떼어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에게 제공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관리소장 B로부터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위 CCTV 영상자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 2. 판단

####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F(이하 '이 사건 주택관리회사'라 한다)는 2006.경 D 1,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관리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3)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대자보 1장을 게시했는데, 2016. 6. 7.경 누군가에 의해 위 대자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피고인 A는 2016. 6. 8.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CCTV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5)피고인 B는 'E가 2016. 6. 7. 23:07경 대자보를 훼손'하는 내용의 CCTV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를 확인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만든 파일을 USB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6) 피고인 A는 E를 재물손괴 협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7)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 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관리규약 제27조에 의하면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 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 나. 이 법원의 판단

1)「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2)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 기구인 점 ②이 사건 CCTV는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터 잡아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 및 관리 비용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점 ③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CCTV를 관리하며 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회사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이뤄진 수임사무인 점 ④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회장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대자보 훼손 문제와 관련한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CCTV 확인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B가 그동안 이 사건 CCTV를 설치·관리해 온 목적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물 훼손과 관련해 CCTV 영상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제공한 것을 두고,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계훈영